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55,137,505	25,654,125
일반회계	799,459,966	23,983,799
특별회계	55,677,539	1,670,326
공기업특별회계	50,878,597	1,526,35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640,658	949,22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237,939	577,138
기타특별회계	4,798,942	143,968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153,557	64,607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315,640	69,46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9,745	9,89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 재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51,96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